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안 (초)

1. 작은 사업장까지 노동법 준수와 비정규직 제한

1) 문제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
- 2020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5603억 원), 건설업(2779억 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403억 원) 순으로 많았음. 규모별로 보면 5-29인(6550억 원), 5인 미만(5120억 원), 30-99인(2673억 원) 순으로 많았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 휴가와 같은 조항부터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2099만 2천 명이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38.4%에 해당한다.
-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대비 355,521명 늘어난 7,043,964명이었다.
- 특히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기준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141만 4천 명, 30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101만 6천 명에 달한다. 이는 20대와 30대를 합쳐서 전년 대비 12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다.
-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에서 여전히 편법으로 1년 11개월씩 고용계약을 하거나 위장도급으로 고용하고 있다.

2) 요구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휴일법 등 적용확대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등에 대한 위반을 줄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확대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을 폐지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조가 넘는 막대한 임금체불 규모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동시에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임.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제한: 상시업무 비정규직 고용금지 및 편법적 비정규직 고용 금지, 불법파견 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불법파견 소송 및 생계가 달린 노동법 소송에 대한 국가지원 및 신속한 처리 보장,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사유 제한하는 법제화 필요

2. 국가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1) 문제점

- 청년 체감 실업률(확장 실업률)은 2021년 기준 23.1%를 기록했다.
- 청년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을 국가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미비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2) 요구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등 여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구직자 혹은 노동자가 구직, 실업, 이직 등의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받고 지원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통합 기구가 필요함. 즉 국가차원에서 구직자·재직자·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추가로 직업훈련과 숙련 형성 지원해야 함.
- 단순히 자격증 교육이 아니라 기초부터 전문적인 교육훈련까지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노동자가 일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즉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사회로 변해야 함.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을 조기 시행하고, 산재가입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 보상과정 빠르게 처리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법원 판결이 근로복지공단보다 더 폭넓게 노동자 건강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계와 치료비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움. 법원 판례에 따라 승인 판정 사례를 늘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폭 넓게 보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¹⁾

1) 손성배·신현정기자,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판정 통보 '긴 시간' 노동자·유족의 후유증」, 경인일보, 2022.02.09,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208010001278>

1. 불법투기 근절과 주거 공공성 강화

1) 문제점

- 지난해 12월 실시한 ‘청년 노동자 대선 요구안 설문조사’ (20-30대 청년 1,025명 참여)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지기를 희망하는 대선 의제로 21.7%의 청년들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꼽았다. 또한 ‘현재 청년이 처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자본을 제재하는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60.9%의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향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도 68.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 2021년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유력 대선 후보들도 택지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이나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 공직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다반사다.
- 2021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9억,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불로소득만 늘어 내집마련 기간도 문재인 정부 취임 초보다 18년, 2배로 늘어났다.
(경실련, 2021.12.8.,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2) 요구

- **부동산 개발·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부동산 개발·공급 과정에서 정치인·공직자의 비리나 불법 투기 사실이 드러났을 시 강력한 처벌, 투기이익 환수
- 주택 모두 공급을 충분히 늘리고,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도 현행보다 공급확대
- 주택 건설 시 최소한의 주거 기준 마련 (평 수, 소음, 일조량 등 기준 마련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건축한 건설업체 및 시행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함

1. 산업안전법의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

1) 문제점

- 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방광염·우울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직의 고객응대매뉴얼 등의 구체적 안전보건규칙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 공공부문 위험작업장에는 2인 1조 원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민간영역은 방치되면서 계속 산재 발생 중.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의 2인 1조 근무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실제 청년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배달노동·플랫폼노동 등에 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괄적 서술이 되어 있으나, 자동차·이륜차의 안전점검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야간노동 시간 등)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2) 요구

- 서비스직·플랫폼노동자·배달노동자 등 다양한 직군에 대한 구체적 안전보건규칙 정립
- 위험작업장 2인1조 원칙 민간분야 및 방문서비스노동자 까지 확대
- 규정된 안전보건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 강화

2. 정신장해와 업무상 스트레스

1) 문제점

- 청년노동자들은 나이와 업무상의 상하관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과로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신장해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해당 문제가 업무상의 내용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과로사·과로자살의 경우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장해를 겪고, 해당 정신장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증명해야 하여 더욱 어려움이 크다.
-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 요구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에 관한 추정규정 도입
- 직장 내 성희롱 처리에 관한 논스톱 시스템 도입

3. 산재처리 및 응급의료시스템

1) 문제점

-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사업체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축소하여 법인 신고하기도 함.
- 산안법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원청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장에 없던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최근 정몽규 회장의 대주주 자격 유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임 회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 2021. 12. 민주노총이 실시한 청년노동자 대선요구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43.9%의 청년들이 기업에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0.6%에 달해, 처벌 강화를 원하는 응답이 70%를 넘기는 상황이다.
- 또한, 제조업과 건설분야의 산업재해는 ‘골든아워’로 손각을 다투는 상황이 많으나, 제조시설이나 건설현장이 수도권 등 의료밀집지역에 있지 않아 산재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각을 놓쳐 버리는 경우도 많다.

2) 요구

-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도 예방조치로서 관리감독을 진행
-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실시
- 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
- 산재피해자를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1) 문제점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4개의 법안 계류 중
-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로 알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현 정부는 ‘차별 금지 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을 핑계로 방치 및 지체하고 있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법과 제도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현하는 것보다 대선시기 표심만을 의식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임.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차별금지 사유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차별의 개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 복합차별
평등의 영역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피해 구제	피해자의 권리 회복, 차별행위의 중지 및 피해 원상회복, 불이익금지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평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2) 요구

-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2.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

1) 문제점

○ 성별 임금격차 및 고용불안 실태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1.48%, G20,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
-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를 약속했지만 서울시에서 조례로 도입하는 것에 그침.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로는 고양시, 창원시가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 또한 육아휴직의 권리에서 배제됨.
- 2020년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OECD 19개 국가에서 신생아 100명당 여성은 118.2명, 남성은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4.5%로 나타남(2020년 기준). 그 중 54.8%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무자.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노동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2) 요구

① 성별 임금격차 근절을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성평등 공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함.
- 노동자의 평균보수를 고용형태(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성별, 근속연수별로 공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함.

② 폭 넓은 출산·육아휴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육, 돌봄을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육아휴직기간 1년 혹은 1년 반으로 연장
- 남성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 실시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1. 지방소멸

1) 문제점

- 국내 전체 인구 5183만 가운데 2309만의 인구가 서울·경기지역에 모여있으며,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화는 필연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수반한다.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통해 산출한 인구감소지역은 작년 11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9곳
- 지방소멸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다. 그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학 진학의 목표로 일컬어지는 ‘인서울 대학’ 과 ‘지방대’ 라는 서열 구분으로 드러나는 바,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되는 지점에서 청년층의 지역 인식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의 수요가 큰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강화된다.
- 수도권은 나날이 늘어나는 인구와 수요에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개인의 행복도 줄어들기만 할 뿐이다. 소멸의 위협에 처한 지역은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며 고유의 문화자원을 상실하고, 무분별한 도시적 관점의 지역개발로 환경자원마저 위협받고 있다.

2) 요구

① 중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도시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
- 제조업, 관광산업, 금융 등 지역상황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 청년 수요의 지역 인프라 조성을 통한 살고 싶은 지방 개발
- 지역거주 중소기업, 농어업 종사 저소득 청년노동자 대상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② 농어촌마을단위 청년정착

- 농민수당, 청년농민주거지원정책, 직거래시장 활성화, 기술지원을 통한 직업정착지원 등 청년 농어촌 정착을 위해 충분한 생계와 주거, 경제적 자립을 보장
- 청년 농민 커뮤니티 활성화, 노동·주거·마을경제 결합형 청년정착지원 등 농어촌 정착 청년의

지역 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 마련

- 산업단지와 폐기물, 반생태적 관광시설 등 도시적 관점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맞춤형 인구보전정책 마련

③ 소멸위기지역 공공인프라 구축

- 소멸위기에 따라 사라져가는 공공인프라로 인해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위협받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 공공교통, 공공교육 인프라 확충
-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아무런 타당성 없는 정치적 국토개발 규탄